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정성훈 의원)

의안 번호	13
----------	----

발의연월일 : 2026. 3. 5.

발의자 : 정성훈·공유신·성용근·
송은영 의원(4명)

1. 제안이유

「양산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확보하고 단지 내 불필요한 민원 및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기업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또한, 도로로 인정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불필요한 동의 절차나 해석 차이로 인한 민원 불편과 혼선을 예방하여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가설건축물 대상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 휴게시설 추가(안 제18조제2항제18호)
- 나. 가설건축물 대상에 제조업소 내 천막구조 창고 추가(안 제18조제2항제19호)
- 다. 제28조제3호 단서조항 삭제(안 제28조제3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에 제18호,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8.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로서 조립식구조, 경량철골구조, 컨테이너구조이며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1개층으로 한정하고 옥상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독립적으로 설치될 것
-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단,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에 설치하는 천막구조의 창고용 건축물

제28조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9의 이 조례 제18조제2항란의 제18호와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조례 제8조 제2항	18.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로서 조립식구조, 경량철골구조, 컨테이너구조이며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1개층으로 한정하고 옥상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독립적으로 설치될 것	제한 없음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단,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에 설치하는 천막구조의 창고용 건축물	제한 없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p> <p>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17.(생 략)</p> <p>18. <신 설></p> <p>19. <신 설></p> <p>제28조(도로의 지정) (생 략)</p> <p>1. ~ 2. (생 략)</p> <p>3.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사용 중인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및 제방 (단, 관리청에서 도로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제18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p> <p>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17.(현행과 같음)</p> <p>18.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로서 조립식구조, 경량철골구조, 컨테이너구조 중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1개층으로 한정하고 옥상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독립적으로 설치될 것</p> <p>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단,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에 설치하는 천막구조의 창고용 건축물</p> <p>제28조(도로의 지정) (생 략)</p> <p>1 ~ 2. (생 략)</p> <p>3.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사용 중인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및 제방</p>

현 행

개 정 안

[별표 9]

가설건축물 용도별 존치기간 연장 횟수(제18조제3항 관련)

[별표 9]

가설건축물 용도별 존치기간 연장 횟수(제18조제3항 관련)

구 분	가설건축물 용도	연장횟수	비 고
영 제15조 제5항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재해종료일 까지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홍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한 없음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공사완료일 까지	
	4. 전시를 위한 건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본 건물 사용승인 시까지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제한 없음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한 없음	

구 분	가설건축물 용도	연장횟수	비 고
영 제15조 제5항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재해종료일 까지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홍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한 없음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공사완료일 까지	
	4. 전시를 위한 건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본 건물 사용승인 시까지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제한 없음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한 없음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제한 없음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 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 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제한 없음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 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한 없음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제한 없음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 양육실	제한 없음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한 없음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관광·행사종료시까지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제한 없음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제한 없음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 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 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제한 없음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 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한 없음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제한 없음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 양육실	제한 없음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한 없음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관광·행사종료시까지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제한 없음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한 없음	
이 조례 제18조 제2항	1. 공장부지 2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처리시설	제한 없음	
	2. 시장이 도시가로경관정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공고한 가로 및 재래·상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및 비 가리개로서 전천후 시설	제한 없음	
	3. 주된 건축물의 기능향상에 필요한 전기·기계 등 보호시설로 주요구조부가 경량구조인 건축물	제한 없음	
	4.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하는 옥외주차장내 경량구조로서 15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무실	제한 없음	
	5. 공장부지 내에 레일 등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중량물의 이동에 필요한 구조물에 설치하는 천막시설	제한 없음	
	6. 유리 또는 고정식 비닐하우스 등 이와 유사한 구조의 화원(지상에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한 없음	
	7. 「농지법」 규정에 적합한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제한 없음	
	8. 단독주택에 붙여 설치하는 경량구조의 비가리개시설(전체 면이 완전 개방된 형태로서 해당 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한 없음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한 없음	
이 조례 제18조 제2항	1. 공장부지 2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처리시설	제한 없음	
	2. 시장이 도시가로경관정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공고한 가로 및 재래·상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및 비 가리개로서 전천후 시설	제한 없음	
	3. 주된 건축물의 기능향상에 필요한 전기·기계 등 보호시설로 주요구조부가 경량구조인 건축물	제한 없음	
	4.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하는 옥외주차장내 경량구조로서 15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무실	제한 없음	
	5. 공장부지 내에 레일 등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중량물의 이동에 필요한 구조물에 설치하는 천막시설	제한 없음	
	6. 유리 또는 고정식 비닐하우스 등 이와 유사한 구조의 화원(지상에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한 없음	
	7. 「농지법」 규정에 적합한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제한 없음	
	8. 단독주택에 붙여 설치하는 경량구조의 비가리개시설(전체 면이 완전 개방된 형태로서 해당 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한 없음	

9. 세차장내 폐수 적정처리(우수 유입방지)를 위한 경량구조(지붕은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의 세차시설	제한 없음	
10. 각종 유류저장용기 등의 오염물질 유출방지를 위한 임시 비가림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설치하는 파이프 또는 경량구조의 시설에 한한다)	제한 없음	
11. 공장부지 내에 설치하는 경량 또는 컨테이너 구조 등의 직원휴게소 및 간이식당으로써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한 없음	
12.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 등으로 설치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용기 보관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마을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한 없음	
13. 물품 저장을 위한 냉장·냉동고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한 없음	
14. 낚시터 허가지 안의 천막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	제한 없음	
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의 용도로 관광, 문화, 체육시설 등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림 막구조물	제한 없음	
16. 「산지관리법」 규정에 적합한 산림경영관리사	제한 없음	
17.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된 영 별 표 1의 단독주택(3층 이하)의 옥상에 설치하는 구조안전이 확인된 외벽이 없는 경사진 지붕형태의 경량철골조 비가림시설. 다만, 창고 및 거실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를 준수하고, 최고 설치 높이는 1.8미터 이하, 지붕 하단부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한 없음	

9. 세차장내 폐수 적정처리(우수 유입방지)를 위한 경량구조(지붕은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의 세차시설	제한 없음	
10. 각종 유류저장용기 등의 오염물질 유출방지를 위한 임시 비가림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설치하는 파이프 또는 경량구조의 시설에 한한다)	제한 없음	
11. 공장부지 내에 설치하는 경량 또는 컨테이너 구조 등의 직원휴게소 및 간이식당으로써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한 없음	
12.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 등으로 설치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용기 보관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마을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한 없음	
13. 물품 저장을 위한 냉장·냉동고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한 없음	
14. 낚시터 허가지 안의 천막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	제한 없음	
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의 용도로 관광, 문화, 체육시설 등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림 막구조물	제한 없음	
16. 「산지관리법」 규정에 적합한 산림경영관리사	제한 없음	
17.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된 영 별 표 1의 단독주택(3층 이하)의 옥상에 설치하는 구조안전이 확인된 외벽이 없는 경사진 지붕형태의 경량철골조 비가림시설. 다만, 창고 및 거실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를 준수하고, 최고 설치 높이는 1.8미터 이하, 지붕 하단부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한 없음	

	18. <신 설>				18.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로서 조립식구조, 경량철골구조, 컨테이너구조이며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1개층으로 한정하고 옥상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독립적으로 설치될 것	제한 없음	
	19. <신 설>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단,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에 설치하는 천막구조의 창고용 건축물	제한 없음	

관계 법령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4. 10.>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

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 9. 22.,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3. 9. 12.>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 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는다.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1층 또는 2층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1층인 가설 건축물만 해당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 2)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2층 이상인 가설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다만,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 제39 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 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 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횡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횡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 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